

의안
번호

415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20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용진의원 외 12명

나. 의안번호 : 제415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2. 3.

라. 회부일자 : 2025. 2. 10.

2. 제안이유

-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결과 평가 등 의무사항을 명시함(안 제4조)
- 다.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구분 및 관리 등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구청장의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명시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2. 3. ~ 2025. 2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전부개정안은 2014년에 제정된 현 조례에 관련법령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응급의료법’이라 한다)을 반영하여 현재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,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를 지원하여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명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상위법 「응급의료법」 제4조(1)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

○ 안 제2조(정의) 정비

조례상 사용하는 “응급의료”, “자동심장충격기”의 정의를 추가함

○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정비

구청장은 응급상황 발생시 구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고,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등에 설치 및 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재 정비함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 [전문개정 2011. 8. 4.]

※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재정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24.>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○ 안 제4조(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) 신설

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

○ 안 제5조(응급처치 교육) 신설

구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

○ 안 제6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 신설

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장에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

○ 안 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) 신설

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을 법령상 설치대상인 '설치의무시설'과,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인 '설치권고시설'¹⁾로 구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

1) 2024년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 및 관리 지침 6p

< 자동심장충격기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 지정에 대한 안내 >

- (내용)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외에 지자체별 설치 권고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
- (방법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별 조례 제·개정(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등)

○ 안 제8조(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) 신설

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 규정을 신설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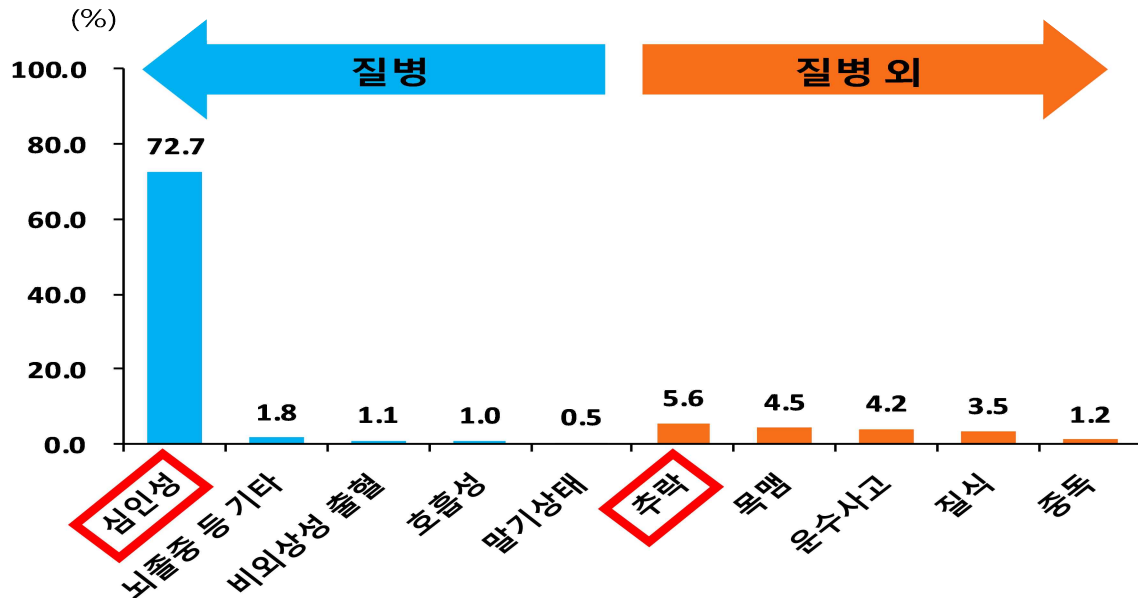
○ 안 제9조(응급의료 지원), 안 제10조(홍보), 안 제12조(포상) 신설

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홍보,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고, 응급의료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사업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응급 상황에서 성북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입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함.
- 다만, 질병관리청 2023.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, 심정지 환자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, 부정맥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.4%이고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의 환자 발생률이 전체의 47%로 가장 많다고 함. 특히 질병이 있는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올바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대상자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[그림 1]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(2023년 상반기)



[그림 2]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장소(2023년 상반기)

